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의사의 의무 (2)

이 준 상

다. 구급환자의 진료의무

의료법 제 16조 2항은 의사의 구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다. 일반적으로 『구급환자』라 함은 『불의의 재해나 기타 위급 상태 하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를 말한다.

따라서 구급환자에 대한 구급 의료 체제 및 구급에 대응하는 의료공급에 의해서 의사의 진료 책임은 실질적으로 경감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구급환자에 대한 진료 의무는 의사의 진료의무 강제의 전형적인 예이나 그로 인한 책임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구급환자라 할지라도 충분한 의

료공급이 있으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충분한 의료공급이 못되어 중대한 결과를 야기시켰을 때에는 물론 법적인 책임이 뒤따르겠지만, 의료기관 내에 충분한 의료공급 시설이 없을 때에는 자체없이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타 의료 기관으로 이송시켜야 할 의무도 의사에게 있는 것이다.

2. 법규 상의 의무

가. 허위증명서 작성 금지 의무

의료법 제 18조 1항은 『의료 업무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증명문서는 공공기관 혹은 직장의 증명서류이기 때문에 문서의 진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성자에 의한 직접 진찰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진단서는 권리·의무의 발생·소멸, 그 외의 법률관계의 증명서류로서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형법은 허위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를 범죄로 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형을 가해 문서의 진정을 보호하고 있다.(형법 제233조)

또 폭력·협박에 의한 진단서의 작성 문제의 경우, 긴급 피난의 규정에 의한 면책이 논의된다. 형법 제 22조는『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폭력·협박에 의한 진단서 작성이 과연 면책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 상황하에서 개별적으로 고찰되어야 한다. 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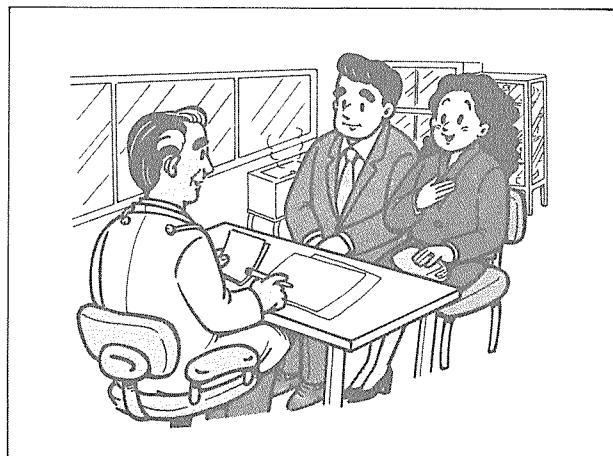
냐하면 경찰 등에 통보하는 등의 여유가 없는 긴급 시에는 면책이 되겠지만 그것은 진단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즉 진단서 작성은 거부 할 수 있었는가 아닌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획일적으로 협박이 있으면 면책된다고 하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이다.

나. 비밀 보유 의무

의료법 제 19조는『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에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형법 제 317조는『의사 …가 그 직무 상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만 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비밀』이란 의사가 진료과정

진단서는
권리·의무의
발생, 소멸,
그 외의
법률관계의
증명서류로서
중요한
문서이다.



만약 의사에게 상담을 하고 처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불이익적인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의사를 신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밀보유는 의사의
직업윤리로서 당연한 것이다.

에서 알 수 있었던 환자의 비밀을 말하고 그 내용은 증상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지 않는다. 의사는 환자의 신뢰없이 적절한 진료를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의사에게 상담을 하고 처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불이익적인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의사를 신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비밀보유는 의사의 직업윤리로서 당연한 것이다. 법이 이를 의무로 규정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는 것은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고 적정한 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보장을 목표로 하는 취지라 생각된다.

환자의 비밀 보유는 1차적으로 환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이고, 동시에 일반인이 의사를 신뢰하여야 비로소 의료성과도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공공의 이익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의사의 비밀 보유 의무 규정은 한 편 개인의 비밀 보호이지만 타면 국민의 건강의 증진을 궁극의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의사에게 털어놓은 비밀을 공표해서는

안된다는 부작위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히 환자에 대해 부담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의사들은 그 비밀을 올바르게 이용해야 하는 적극적 의무를 공중에 대해서 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비밀보호의 한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 진료기록부의 기재 및 보존 의무

의사가 진찰·치료를 한 때에는 곧 진료에 관한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입해야 하고, 의사(병원 관리자 포함)는 진료 종료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진료기록부의 작성은 의무지우는 취지는 첫째, 의사에게 의료의 적정을 증명시키는 수단을 법적으로 강구함으로써 행정적인 단속을 가능하게 하자 하는 것, 둘째, 각종 증명서의 작성에 필요한 증거 서류로 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 ④

〈필자=한국의료법학회장·고려의대 교수〉